

예 산 총 칙

200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2,542,731	8,176,282
일반회계	243,617,167	7,308,515
일반회계	243,617,167	7,308,515
기타특별회계	28,925,564	867,767
상수도특별회계	9,065,672	271,97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6,554	19,39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578,826	47,36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09,000	15,270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16,675,512	500,26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00,000	12,000
기반시설특별회계	50,000	1,500

제 2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제 3 조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297,007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직무수행경비
3. 법정 의무부담금(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